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51304
등록일자	2015. 12. 17.
결재일자	2015. 12. 1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	부구청장 직무대리	구청장
임경훈	한문석	박선옥	김효길	주윤중	12/18 신연희
협조자	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				

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

제정사유

-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

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기능
 -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,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,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
- 위원회의 구성 :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.
- 위원회의 임기 :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

향후일정

- 2016. 1월 :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 상정
- 2016. 2월 : 강남구의회 상정 및 의결
- 2016. 2월 : 조례안 공포 및 시행

2015. 12. .

강 남 구
(사 회 복 지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복지법 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추진경위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, 조사,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: 등록 장애인 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[계속 :] [신규 :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시 14개 자치구 조례 제정 [강북구, 강서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동구, 송파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종로구, 중구, 중랑구] 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사항 없음 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

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I 큰 거

- 장애인복지법 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

II 제정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III 주요 내용

-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
 -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,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,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

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

-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

-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

IV 추진 경과

2015.10.27 :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 평가 심사 의뢰

2015.11.05 : 성별영향 평가 검토 결과 통보(보육지원과)

○ 검토결과 : 개선 의견 있음

제정안	검 토 의 견
	수정안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~ ③ (생략)	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특정 성(남성 또는 여성)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 ~ ③ (생략)

○ 조치사항 : 보육지원과 의견 반영

2015.11.05 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(감사담당관)

○ 검토결과 : 원안동의

○ 조치사항 : 특기할 사항 없음

□ 2015.11.24 : 입안심사 의뢰

□ 2015.12.07 : 자치법규 입안심사안 통보(기획예산과)

○ 검토결과 : 개선 의견 있음

제정안	검토의견	비고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(중간 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 1.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강남구”라 한다)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.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. 구의원 1명 5.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남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</p>	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(중간 생략)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 1.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강남구”라 한다)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. 구의원 1명 (삭제) 5.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남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</p>	<p>*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일치하도록 “30명 이내”로 규정</p> <p>*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자를 위원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 검토 요망</p>

○ 조치사항 : 기획예산과 의견 반영

V**향후 일정**

- 2015. 12월 : 조례(안) 방침수립 및 입법 예고(20일 이상)
- 2016. 1월 :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 상정
- 2016. 2월 : 강남구의회 상정 및 의결
- 2016. 2월 : 조례안 공포 및 시행

VI**행정 사항**

- 입법예고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(공보실, 전산정보과)
- 조례규칙 심의 : 조례규칙심의회 상정(기획예산과)
- 조례안 상정 : 조례안 구의회 상정 협의(기획예산과)

붙임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